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플랫폼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에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1. 17.)입니다.(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임실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임실군,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임실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제조건기간		없음

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11월 27일(월)	11월 28일(화)	11월 29일(수)	12월 05일(화)	12월 18일(월) ~ 12월 20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10:00 ~ 16:00)
장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사 건본주택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93)

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임실군 주택토지과 - 51391호(2023.11.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14 외 14필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1~15층, 3개동 총 129세대 [특별공급 51세대(일반기관추천) 9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17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 000577	01	84,973A	84	84,973A	27,2285	112,2019	40,9672	153,1691	61,7446	99	9	10	17	3	8	47	52	7
		02	111,742Z	111	111,742Z	33,8646	145,6073	53,8732	199,4805	81,1961	30	-	3	-	1	-	4	26	2
합계											129	9	13	17	4	8	51	78	9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비 및 선택품목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층별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계약시 잔금 (30일내)	잔금(30일내)						잔금(30일내)	입주시 잔금(30일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84	99	1층	7	100,924,530	243,175,470		344,100,000	10,000,000	2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103,230,000			
		2층	7	104,268,150	251,231,850		355,500,000	10,000,000	2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106,650,000			
		3층	7	107,582,440	259,217,560		366,800,000	10,000,000	2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110,040,000			
		기초층	78	110,926,060	267,273,940		378,200,000	10,000,000	27,820,000	37,820,000	37,820,000	37,820,000	37,820,000	37,820,000	37,820,000	37,820,000	37,820,000	113,460,000			
111	30	1층	2	142,778,440	312,746,872	31,274,688	496,800,000	10,000,000	30,00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146,040,000			
		2층	2	147,471,240	323,026,145	32,302,615	502,800,000	10,000,000	4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150,840,000			
		3층	2	152,193,370	333,369,663	33,336,967	518,900,000	10,000,000	4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51,890,000	155,670,000			
		기초층	24	156,886,170	343,648,936	34,364,894	534,900,000	10,000,000	4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160,47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개별 부담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비,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개별부담임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발코니 확장공사	84	15,000,000	1,500,000	13,500,000
	111	19,000,000	1,900,000	17,100,000

III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획	광주은행	1107-021-631582	코리아신텍(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금액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납부계획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301호 '홍길동' →10103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정직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II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			111			합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	2	2	3	3	3	1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17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3
생애최초 특별공급					8		8
합계					47		51

■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구분	내용
1회 청약/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필수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는 기존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면적별/면적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등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난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를 포함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예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양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소형 ·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임신신고일일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미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제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임실군)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에 발생시 전라북도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 10년 이상 장기부부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자차로모집공고일 현재 근교차 또는 지역입장제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부담,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을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에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임실군)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에 발생시 전라북도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 10년 이상 장기부부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요함.
 - 주민등록표초상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신청일과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당첨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입찰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청약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지역을 간헐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한 경우 해당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중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특례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례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임실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IV 사업주체 및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3-101-0004600 호	삼백육십구억칠천삼백삼십만원정 W36,973,300,000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공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중주거 전부에 대한 동시사용공사 포함)까지

■ 감리자 및 감리금액